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사·법인명			
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등록 가축의 종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열화사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신고인 제출서류	1. 등록증(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처리기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